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08. 10. 16(목)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0. 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0. 7.

## 2. 제안이유

- 웅양면에 지방상수도를 건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 3.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취득	토지	4필지		5,304	21,420	
		웅양면 죽림리 산106	임	138	45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산106-2	임	12	2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산97-3	임	2,646	431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252-5	답	2,508	20,942	정수장

##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및 지목	수량(m <sup>2</sup> )	예정금액	비 고
		해	당	없	음	

##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제14조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 웅양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정수장 및 배수지 부지취득

- 웅양면 지역은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과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웅양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 4월에 웅양농어촌지방상수도건설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며 (2008. 10. 10.) 향후 정수장 시설 및 배수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